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3. ~ 3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정경제부령 제 호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중 “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”을 “재정경제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약서 Sworn Statement

1. 본인은 「세무사법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.

1. I hereby swear that I do not come under any item of the Article 4 of Certified Tax Accountant Act.

2. 본인은 「세무사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의15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후 성실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. I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y as a Foreign Tax Advisor after registering with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as provided in the Article 19-15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, upon being approved as a Foreign Tax Advisor as provided in the Article 19-3 of the same Act.

년 월 일

이름
서명

국세청장 귀하

담당자:

[참고]

「세무사법」

제4조(세무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람**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**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**
3. 파산선고를 받고 **복권(復權)**되지 아니한 **사람**
4.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**사람**
5. 이 법, 「공인회계사법」 또는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**사람으로서 3년(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** 정직(停職)된 **사람으로서**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**사람**
6.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**사람**
7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**사람**
8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**사람**
9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**사람**
10. 이 법과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**사람으로서**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**사람** 또는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**사람으로서**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**사람**

[Reference]

「Certified Tax Accountant Act」

No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f Article 4 shall regi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:

1. A minor;
2. An incompetent or quasi-incompetent;
3. A person who was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;
4.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/she was dismissed or released from office in consequence of impeachment or disciplinary action;
5.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/she was expelled or his/her registration was cancelled in consequence of disciplinary action under this Act,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or the Attorney-at-Law Act, and a person whose business is under suspension;
6. A person who is in the period for refusal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7(3);
7.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/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or heavier punishment, as declared by a court, was completely executed (including cases where the execution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d) or exempted;
8.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, as declared by a court, was completed;
9. A person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declared by a court;
10.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punishment by a fine imposed on him/her under this Act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completely executed or determined not to be executed, or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o him/her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conducted as notified.